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3.

발 의 자 : 한창민 · 윤종오 · 용혜인
손 술 · 김선민 · 전종덕
정춘생 · 윤준병 · 서영석
김재원 · 정혜경 · 최혁진
김종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,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.

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,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.

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

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.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.

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).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시작하는 날”을 “종료되는 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시작하는 날”을 “시작하는 날까지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)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9조(미납국세 등의 열람) 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.	제109조(미납국세 등의 열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종료되는 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	② ----- ----- -----

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<u>시작하는 날</u>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----- -----<u>시</u> <u>작하는 날</u>까지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